

# 보건복지부 시정요구

제 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, 김해시, 밀양시, 함안군, 고성군, 남해군, 거창군

내 용

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」 제4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」 등에 따르면,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그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<sup>200)</sup>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게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 창원시 등 7개 시·군에서는 ‘○○○○○○지원센터’ 등 18개 사회복지시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자 ○○○ 등 43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집행된 퇴직적립금 23,813,945원을 기한 내에 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---

200)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3조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(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)에 따른다. 다만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.(시행 2015.12.24.)

## **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 창원시장은**

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6,785,854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## **김해시장은**

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1,214,7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## **밀양시장은**

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2,058,647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## **함안군수는**

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9,593,692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## **고성군수는**

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2,243,39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남해군수는

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654,1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.

### 거창군수는

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1,263,562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.